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제2장 2019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제3장 분야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사례집에 실린 법제처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권고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3
2.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개요 3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업무 처리 절차 5

제2장 2019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1.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3
2.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1
3.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3
4. 보령시 머드 의외약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 67

제3장 분야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1. 교육·문화 분야 79
 - 가. ○○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1
 - 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2
 - 다. ○○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5
 - 라. ○○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0

2. 경제·산업·농림 분야 153
 - 가. ○○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5
 - 나. ○○시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4
 - 다. ○○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안 181
 - 라. ○○시 □□구 동물보호 조례안 204
3. 보건·복지 분야 229
 - 가. ○○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1
 - 나. ○○시 □□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41
 - 다.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1
 - 라. ○○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9
 - 마. ○○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279
4. 조직·공무원 분야 293
 - 가.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5
 - 나.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27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법제처

제1장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및 운영 현황

1. 도입 배경

- 자치법규 입법·해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그동안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법령 제·개정 사항 통보”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 인력과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자치법규 입법·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심사에 대한 사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 이에, 법제처의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에 자치법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제 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도입

2.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개요

가. 개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자치법규 제정안·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는 이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자치법규 입법 및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자치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 검토의견에 구속되지 않도록 운영

입법컨설팅 주요내용

- | | | |
|---------------------------|----------------------|-----------------------|
| ①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이탈 여부 | ② 신설되는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 ③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
| ④ 다른 조례와의 충돌·모순 여부 | ⑤ 조문의 위치·순서 등 체계 | ⑥ 용어와 표현의 적절성 |
| ⑦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 ⑧ 적절한 부칙을 두었는지 등 | |

나. 지원 체계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입법권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근거로 지원
 - 매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 연말에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선정 및 시상



다. 법적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자치입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법제처장은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추진 실적

- 2019년 총 276건 등록·처리(12.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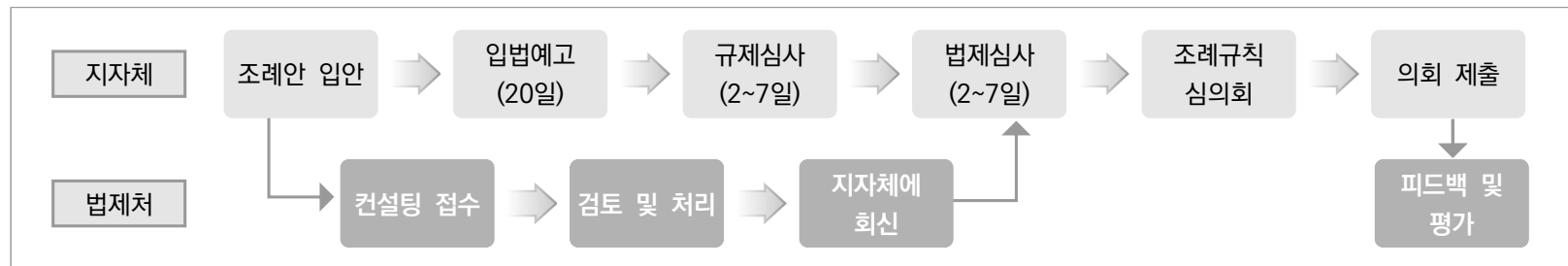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처리건수	65건	107건	172건	207건	276건
전년대비 증가건수		42건	65건	35건	69건

- 2019년 입법컨설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제도 전반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전체 응답자 중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93.3%(’18년 90.67%)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업무 처리 절차

가. 업무 절차도



나. 업무의 절차 및 방법

1) 수요조사

-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실시

2) 입법컨설팅 대상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는 자치법규로 한정하며, 지방의회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자치입법권을 존중하여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안건의 신청 및 처리

- 안건의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입안 또는 입법예고되면 공문(온나라)으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컨설팅 요청
 - ※ 입법컨설팅(법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 회원 가입
 -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하여 안건 등록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된 안건의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

안건 등록(접수) 화면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메시지 4 | 검색 | 로그아웃 | 김영호

[정부입법](#) [법령해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도움말](#)

[의원제시 요청/검토](#) [입법컨설팅](#) [통합검색](#) [지원 사례](#) [정부법령안 의견제출](#) [입법 통합모니터링](#) [입안 심사](#) [질의답변/FAQ](#) [자치입법 지원소개](#)

자치법규 검토
(의원제시 요청/검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안전검토 및 회신
 - 안전검토함 (22)
 - 결재함
 - 완료함
- 접수/배정함**
- 자료실(현황/통계)
 - 안전검토현황/통계
 - 기간별현황/통계
 - 안전이결현황
- 입법컨설팅 자료실

통합검색

자치법규 지원 사례

정부법령안 의견제출

(국회/정부)입법 통합 모니터링

조례규칙 입안심사

질의답변/FAQ

자치입법 지원 소개

대 화 장

접수자 정보

담당과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접수자 김영호

온나라 요청접수 저장 목록

요청자 정보

자치단체명 *				부서명			
요청자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요청일자	2018. 12. 12.	검색	
법무담당부서 *		실무자 *		전화번호 *		검색	

조례담당자 정보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관련공문

제목			
문서번호		보낸일자	
문서본문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입법컨설팅 요청 내용

자치법규명 *							
법령종류	선택	재개정구분	선택	입안단계	선택		
분야	선택	요청분야	선택	표준조례 유무	선택		
입법예고 기간		심의회 상정예정일		공포예정일자			
간급여부	☐ 간급 ☒ 일반						
근거법령	조문번호						
자치법규안	찾아보기						
참고자료	판례	찾아보기					
	법령해석례	찾아보기					
	의원제시사례	찾아보기					
	기타(표준조례 등)	찾아보기					

● 안전의 검토

- 컨설팅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에 회신되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안전 검토기한 준수가 필요
- 검토의견서는 일정한 서식(제정안의 경우 3단 비교표, 전부개정안의 경우 4단 비교표)에 따라 작성
- 조례안의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도가 높은 안전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도 가능

● 안전의 회신

- 법제처는 검토의견서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온나라) 회신
-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의견서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체 심사 실시

／ 입법컨설팅 결과 확인 화면 ／

■ 검토정보

안전명					
안전번호	18-0049	접수일자	2018. 6. 4.		
검토기관		검토자	김종훈	배정일자	2018. 6. 4.
전화번호		메일주소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_도봉구)검토의견서.hwp				
회신문	 (서울특별시) 회신문.hwp				
첨부파일					
검토의견설명					
검색키워드					

● 지방자치단체의 피드백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입법컨설팅 결과의 반영사항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반드시 등재하여 피드백하고, 법제처는 이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개선방안 등을 모색

／ 입법컨설팅 결과 반영 화면 ／

■ 입법컨설팅 결과 반영

입법추진현황 *	전체		추진일자	2019. 5. 3.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2019. 5. 3.
컨설팅결과 반영정도 *	☐ 전부반영 ☐ 일부반영 ☐ 미반영 ☐ 입법진행			
조례규칙안 *	파일찾기			
첨부파일	파일찾기			
일부반영 및 미반영사유 등	☐ 정책불일치 ☐ 정책변경 ☐ 규정내용추가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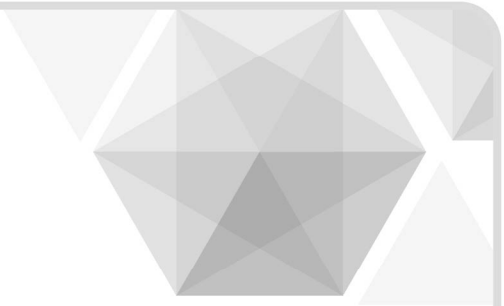
[결과반영 완료](#) [목록](#)

제2장

2019년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법제처



1.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요 청 기 관	서천군 기획감사실
조례안 종류	위임조례, 개정안
조례안 접수일 / 조례 공포(예정)일	2019. 2. 8. / 2019. 5. 20.

입법컨설팅 검토안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시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서천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 3. 신성리갈대체험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서천군수가 음식판매자	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의 약칭 표현과 일치시킴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안 제2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의미가 광범위하여 조례안처럼 규정할 경우 도로점용 대상이 되는 영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행정청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할 때 집행상 문제가 예상되는 바, 시장이 도로의 일부를 특정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과 같이 수정함. ※ 이 경우 첨부서류(도로점용 허가증)를 갖추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바, 「도로법」 제6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노점(제7호)’에 점용장소·점용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는 이동식 노점 형태인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같은 조 제12호의 위임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 시설물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규정하도록 개별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서천군의 경우 도로점용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	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필요). ○ (검토안 제5호)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주민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 등 행정규칙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의견제시 16-0212 참조)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	〈삭 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군수는 서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	○ (원안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15의2 제9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삭제를 권고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 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원안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보고 문구를 정리함. 이하 같음.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 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원안 제3항) 사용·수익허가 기간 내로 영업 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를 권고함. ○ 관계 법령 준수는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 「식품위생법」 등 상위 법령의 규정 없이 수범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를 권고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8조의 삭제를 권고함. ○ 검토안 제2조제2호 등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있으므로,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공포(예정)안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2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568호, 2019. 5. 20., 전부개정]

서천군 (민원봉사과) 950-40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군수는 서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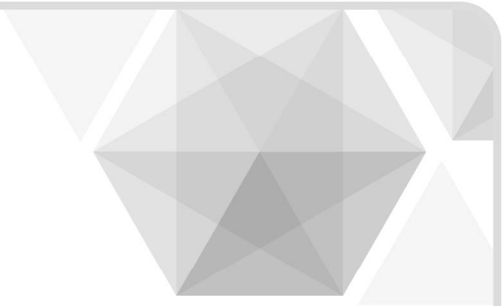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2418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68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요 청 기 관	완도군 자치행정과
조례안 종류	위임조례, 제정안
조례안 접수일 / 조례 공포(예정)일	2019. 8. 2. / 2019. 11. 8.

입법컨설팅 검토안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신청사(완도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의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신청사(완도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사신	○ (원안 제2조) 개별 기금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기금의 목적·정의와 기금설치 규정), 기금의 재원과 용도(재원,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기금 관리와 운용(관리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주체, 운용계획, 심의회, 위탁), 회계 및 결산(회계연도, 결산보고)의 체제와 순서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관련 조문만을 별도로 분리함 ○ (원안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시점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바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연장하면 되므로 원안 단서의 규정은 규정할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완도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원안 제1항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전입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전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규정의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등 2.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신 설〉 (원 안)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조문 이동) 일반적인 기금 운용 관련 조례의 조문 순서에 따라 위원회 규정 앞으로 조문 이동 ○ (원안 제1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재기재의 실익이 없으므로, 검토안 제1호와 같이 조문을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	수정하고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함. ○ 기금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일치시킴 ○ (검토안 제8조)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순서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신설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진위원수의 10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다로 규정한 것으로, 위촉위원 관련 조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해당 조문이 없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적용되므로 규정할 실익은 없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성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국장·부서장 4명 2.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민간인 3명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〇〇〇 업무 담당 국장,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〇〇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 (원안 제1호) 원안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경우 특정직위에 따라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직위를 모두 기재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군 소속 공무원 4인을 규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그 당연직 위원 4인의 직위는 서로 대등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 규정하기 바람 ○ (검토안 제4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해당 조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문이 없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적용되므로 규정할 실익은 없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람 ○ (원안 제4항)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순서에 따라 간사 조문을 별도의 조문(검토안 제13조)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1항) 연임이 가능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 ○ (원안 제2항 및 제3항)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거나, 당연직 위원 등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 기간이 위원의 임기임은 당연한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보임 - 또한 제2항의 “남은기간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등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을 고려할 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9쪽 참조) 이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안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도 법 제13조제2항의 내용에서 포섭이 되고 법령에 따라 심의하면 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 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내 위원회에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조례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개별조례에 위원의 신분에 관한 조항을 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를 검토하 여 규정하기 바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신 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원안 제1항) 회의의 소집 주재와 관련해서는 검토안 제12조에서 규정하면 되므로 위원장의 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수정함 ○ (원안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삭 제〉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000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과장이 된다. 또는 간사는 000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 (원안 제4항 및 제5항) 별도의 조항을 신설 (검토안 제14조)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11조) “팀장”은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간사는 00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또는 00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도록 수정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000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과의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삭 제〉	○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내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가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별조례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보이므로 이를 검토하여 규정하기 바람 ○ (원안 제2호) “팀장”은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000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과의 과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수정함. ○ (원안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 를 권고함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결산) <삭 제>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원안 제1항) 원안 제1항은 검토안 제6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삭 제〉 〈삭 제〉	○ (원안 제13조) 원안의 규정이 없더라도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14조)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므로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규정 실익이 없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15조)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5조의 삭제를 권고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포(예정)안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8.]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616호, 2019. 11. 8., 제정]

완도군 (세무회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신청사 (읍면·직속기관·사업소·완도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미래해양사업단장, 기획예산담당관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 나. 청사신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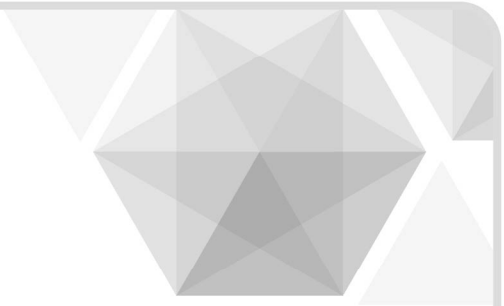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팀장

제17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 칙 (2019. 11. 8. 조 2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요 청 기 관	보은군 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 종류	자치조례, 제정안
조례안 접수일 / 조례 공포(예정)일	2019. 5. 24. / 2019. 12. 3.

입법컨설팅 검토안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정부 지원 외의 추가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 (원안 제1호와 제2호) 산모 및 신생아의 정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5.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7.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산모에 한정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한다. 가. 거주요건: 모가 보은군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한 자로 신생아가 보은군에	다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 발급 대상자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	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정의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함. ○ (원안 제5호 및 제7호) 검토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6호) 검토안 제3조제1항에서 정의함. ○ 담당자 확인 결과, 이 조례안은 거주 요건을 충족한 산모 모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되, 산모가 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군의 지원 범위를 달리하려는 취지임. - 복지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모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출생신고 된 자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비용: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 (다만, 본인부담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2. 바우처 지원 초과 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산모에 한정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바우처)을 지원한다. 가. 거주요건: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나. 지원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지원금(바우처) 전액 다. 지원조건: 지침의 단축,표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4조(지원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산모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일부를 지원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정부지원금 만큼을 군에서 지원하려는 취지라 하였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여 정리함. ○ (원안 제1호가목) 담당자 확인 결과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산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원안 제1호가목의 신생아의 출생신고 요건은 삭제하기로 협의함. ○ (검토안 제2항 단서)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2호다목의 취지는 원안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하였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정리함. ○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조례가 아닌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둘 것을 권고함. - 규칙 등으로 산모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본인부담금 납입 후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침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보은군 거주기간 2.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검토안 제4조제2항으로 정리함. ○ 신청서 등의 서식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조례가 아닌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둘 것을 권고함(검토안 제4조의 검토의견 참고).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	〈삭 제〉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 원안 제6조제2항은 검토안 제4조제3항으로 정리함.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서 군수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삭제를 권고함(법제처 의견 15-1347 참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건	않는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삭 제〉 제6조(대장 관리)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을 작성하고	○ 원안의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본인 부담금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삭 제〉	○ 원안에서 표현하는 ‘지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서인바, － 조례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검토안과 같이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규칙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할 것을 권고함. ○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바우처 생성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2조의 삭제를 권고함. ○ 검토안에 따르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부칙 제2조의 취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려는 취지라 하였으나, - 취지대로 규정하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19년 말인 산모의 경우 지원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 또는 지원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포(예정)안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09호, 2019. 12. 3., 제정]

보은군 (보건소) 043-540-5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 발급 대상자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산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보은군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대장 관리)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보령시 머드 의외약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

요 청 기 관	보령시 머드 의약품 등 개발 지원 조례안
조례안 종류	자치조례, 제정안
조례안 접수일 / 조례 공포(예정)일	2019. 8. 7. / 2019. 12. 31.

입법컨설팅 검토안

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보령시 머드 의약품 등 개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 의약품 등 개발 시책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신 설〉	보령시 머드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머드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품 중에서 보령시 머드가 함유된 제품을 말한다.	○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안의 ‘머드 의약품 등’을 ‘머드 의약품’으로 수정하기로 함. ○ 원안의 ‘의약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품인 것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였는바, 「약사법」을 인용하여 정의규정을 마련함. - ‘머드 의약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

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 의약외품 등 연구개발,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 등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머드 의약외품 등 전략산업 및 신기술 개발 사업 2. 머드 의약외품 등 개발 위한 정보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머드 의약외품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 〈삭 제〉 2.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3. 머드 의약외품 관련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4.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리 5. 머드 의약외품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의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3조와 제4조를 병합하여 검토안 제4조로 정리함. ○ 원안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은 검토안 제2항으로 정리함. ○ (원안 제2호) 원안 제3조제1항제2호와 제4조제1항제2호를 병합하여 검토안 제4조제1항제4호로 정리함.

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6. 그 밖에 시장이 머드 의약품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2항)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3조 제2항과 제4조제2항은 같은 취지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수정함. ○ 원안 제3조와 제4조를 병합하여 검토안 제4조로 정리함.

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머드 연구개발 및 확산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원안의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삭제を 권고함. ○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의 권

제 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7조의 삭제를 권고함.

공포(예정)안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

[2019. 12. 31. 공포 예정]

보령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머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중에서 보령시 머드가 함유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머드 의약외품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
2.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3. 머드 의약외품 관련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4.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리
5. 머드 의약외품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머드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장

분야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1. 교육·문화 분야

안 건 명	○○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 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 가 30조 이상인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장'으로 구분하기는 하나, 검토안에서는 조문 수가 30개 이하이므로 장의 삭제를 권고함. 이하 같음. ○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가 없으므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삭제하 고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 원안 제3호·제4호 및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 원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활동 지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조문을 분리하여 정리함. ○ 원안 제2항은 검토안 제4조제2항에서 정리함.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안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 자구를 수정함.
제4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달 운영 및 청소년 축제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활동 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 활동 7.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8.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 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 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단체·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7. 통일교육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8. 제5조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 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3조제2항을 수정하여 정리함.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감독이 가능하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삭 제〉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군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청소년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하므로,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할 필요는 없음.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안·행사 진행 등 제8조(자격 및 구성) ① 위원은 관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삭 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性)·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원안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수정함. ○ (검토안 제1항) 검토안 제3항에 따라 위원의 주민등록 지역은 ○○군이므로, 위원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요소로는 “지역”보다 위원의 “소속”이 적합할 것임. ○ 원안 제4항에서 위원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 및 추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추천인지 명시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나이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	○ (검토안 제5항)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검토안 제2항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9쪽 참조). ○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3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해촉할 수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검토안의 단서로 정리함. ○ 검토안 제9조에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지 않고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검토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위촉 해제를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 (검토안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구분을 없애 필요한 경우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함.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입법례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 원안 제1항에서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하였으므로, 회의 소집 요건이 되는 재적위원의 수는 군 사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2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안 결과)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항의 내용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5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검토안에서는 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함.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위원의 수당 규정이 있으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제13조(필요 경비 등 지원) 위원회 임무수행과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표창,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5조를 검토안 제13조로 정리함.

안 건 명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위임조례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목적규정을 수정함. ○ (원안 제2조) 원안 제2조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상위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원안 제3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해당 법률을 인용하여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2.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청소년수련관·외국어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교육연구 4. 문화예술 진흥·지역문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7.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8.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 (검토안 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 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안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는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원안 제3조제1호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 원안 제3호의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수반되는 당연한 업무이므로 주요업무로 규정하기엔 적절하지 않아 보임[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원안 제10호(검토안 제5호)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2. 사업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삭 제〉	○ (검토안 제2호) 원안 제2호의 남한산성아트홀·문예회관 등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의 형식을 검토안과 같이 수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검토하여 규정하기 바람. ○ (검토안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원안 제6호, 제9호 및 제10호를 표현을 정리하여 규정함. ○ (원안 제1항)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삭 제〉	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원안 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원안 제7조 및 제8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제7조의 임원의 구성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법제처 의견제시 15-0083 참조).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원안 제8조제3항)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사회 운영”은 정관에 정할 사항인바 해당 내용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삭 제〉	○ (원안 제9조)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사회 운영”은 정관에 정할 사항인바 해당 내용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삭 제〉	○ (원안 제10조)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원칙 등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음.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삭 제〉	○ (원안 제13조)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4조) 원안에서는 재단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안은 재단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를 권고함 (법제처 의견제시 18-0102 참조).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5조)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 (원안 제16조) 원안은 공유재산을 ○○문화재단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역문화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하면 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삭 제〉	○ (원안 제17조) 정관에 따른다는 내용은 조례에 별도조문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임으로 삭제를 권고함.
제18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8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될 사항이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 (원안 제19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원안 제20조)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 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20조의 삭제를 권고함.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2조(설립준비)	○ 부칙과 관련해서 별도의 설립준비 위원회 등은 만들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수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준비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정관을 마련한 후 등기를 해야 함.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유효한 정관의 의결이나 인가 등 법률행위를 하려면 이들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근거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됨.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둘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 관련 입법례 참고(법령입안심사기준 p57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부칙 (법률 제6996호, 2003. 12. 11.) 제2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경과기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대경과기연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경과기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255호, 2015. 3. 27.)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

제정 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제3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을 위촉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협약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중인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다. 〈삭 제〉	○ (원안 부칙 제2조제3항) 원안 제3항의 경우 검토안 제2조에 따라 설립준비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그로 하여금 해당 사무를 처리 하도록 하며, 설립등기도 안 된 재단의 직원을 시장이 사전에 채용한다는 것이 체계상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이 조례는 제정안으로서 원안의 “종전의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여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삭제를 권고함.

안 건 명	○○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위임조례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장" 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	○○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별표1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자구를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1호) 검토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제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 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 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 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 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 라 함은 제3조의 사용	2.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제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및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연습사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사용"이란 10명 이상의 특정단체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퇴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		○ (원안 제2호~제15호, 제20호) 별도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용어 사용과 유사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 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구성원은 군에서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8. "기본액" 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 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 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 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11. "체육행사 이외"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경기 및 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2. "체육단체"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말한다. 13. "산하단체"란 체육단체로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회원단체에 소속된 동호회를 말한다. 14. "동호회"란 해당 조직 정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노대상으로 한다.	15.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7.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8.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중인 사람으로 일반사병 및 일반사병에 준하는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의무경찰대원)를 말한다. 20. “야외운동기구”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 기구를 말한다.		○ (원안 제16호) 검토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권고함. ○ (원안 제17호~제19호) 검토안 제11조제3항(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경기장등)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 (연습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1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원안의 제명을 ‘군수의 책무’로 수정하고, 항을 나누어 규정함. ○ 조문의 순서를 변경함 - 군수의 책무, 시설의 개방, 개방의 제한, 이용시간, 이용순서 등의 순으로 변경함.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자가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 ‘사회체육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7. 기타	칙과 체육활동 전반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로 수정함.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	제6조(시설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삭 제>	○ (원안 제1항) 체육시설의 개방의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을 제한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 하여야 하며, 전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반복·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또는 군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 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운	제4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 법 제8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여야 하므로 검토안과 같이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분</th><th>하계 (3월~10월)</th><th>동계 (11월~다음해 2월)</th></tr><tr><td>조간</td><td>05:00~09:00</td><td>06:00~09:00</td></tr><tr><td>주간</td><td>09:00~19:00</td><td>09:00~18:00</td></tr><tr><td>야간</td><td>19:00~22:00</td><td>18:00~22:00</td></tr></table> ②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다음해 2월)	조간	05:00~09:00	06:00~09:00	주간	09: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제5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분</th><th>여름철 (3월~10월)</th><th>겨울철 (11월~2월)</th></tr><tr><td>조간</td><td>05:00~09:00</td><td>06:00~09:00</td></tr><tr><td>주간</td><td>09:00~19:00</td><td>09:00~18:00</td></tr><tr><td>야간</td><td>19:00~22:00</td><td>18:00~22:00</td></tr></table> ②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제6조(사용 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분	여름철 (3월~10월)	겨울철 (11월~2월)	조간	05:00~09:00	06:00~09:00	주간	09: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 자구를 수정함. ○ 원안에서는 ‘사용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사용권을 특정인에게 창설하여 준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144조
구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다음해 2월)																									
조간	05:00~09:00	06:00~09:00																									
주간	09: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구분	여름철 (3월~10월)	겨울철 (11월~2월)																									
조간	05:00~09:00	06:00~09:00																									
주간	09:00~19:00	09:00~18:00																									
야간	19:00~22:00	18:00~22:00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삭제) 5. 기타 입장을 거절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개인·단체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 및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원안 제1항 및 제2항)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3항) 별지 서식의 경우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4항)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어 원안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현행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분</th><th>하계</th><th>동계</th></tr><tr><td>조간</td><td>05:00~08:00</td><td>06:00~09:00</td></tr><tr><td>주간</td><td>08:00~19:00</td><td>09:00~18:00</td></tr><tr><td>야간</td><td>19:00~23:00</td><td>18:00~23:00</td></tr></table>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하계	동계	조간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3:00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신 설〉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산하단체의 체육경기 및 행사 5. 군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 6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삭 제〉 〈삭 제〉	○ 지자체 확인 결과, 원안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삭제하고 검토안과 같이 사용 신청이 접수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사항을 최소화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1호~제3호) ‘주최’와 ‘주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구분	하계	동계														
조간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3:00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득한 즉시 납부한다. ④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절차에 의	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6.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등의 행사 8. 그 밖의 동일 조건일 경우 우선 신청자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체육시설 독점 및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	○ 원안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문과 합쳐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한다.	〈신설〉 〈신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관람 수입총액의 2할(프로경기는 2.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감염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3. 취사·음주 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되는 등 경기장의 질서를 교란 시키는 자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군수가 정한다.	4.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자,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시간 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상행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권(상시 연습사용자는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삭 제〉 ②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권(상시 연습사용자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 (원안 제2항) 별표에 이미 반영되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항) 검토안 제6조제3항에서 사용료 납부기간에 관한 규정을 둬.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노자, 군인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이 전용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감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이 전용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삭 제>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원안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와 같은 내용으로 재기재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6. ○○군에서 육성하는 체육경기 종목으로 사용(연습)코자 할 때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 및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 및 행사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감경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며, 영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안 제2항 제7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6. ○○군 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신 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삭 제〉 ② 군수는 영 제4조의2제7호에 따라 군의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검토안 제2항) 원안 제3항제 11호를 이동하여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을 포함한다)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유공자 및 유족(가족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을 포함한다)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가족을 포함한다)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가족을 포함한다) 7. 「○○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8. 제2조제17호에 따른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삭 제〉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 (원안 제3항제7호) 검토안 제3항제10호로 이동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9. 제2조제18호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노인) 10. 제2조제19호에 따른 군인 〈신설〉 11.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기업)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각 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른 청소년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9.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10. 「○○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감경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검토안 제3항제10호) 원안 제3항제7호를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3항제11호) 검토안 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1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환할 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설 사용일부터 5일전에 사용하지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시설 사용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하고, 시설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있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	없다. 1.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 때 가. 사용 7일전 : 전액반환 나. 사용 6일전 : 100분의 80반환 다. 사용 5일전 : 100분의 60반환 라. 사용 4일전 : 100분의 40반환 마. 사용 3일전 : 100분의 20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 전액을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전액을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았	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60퍼센트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40퍼센트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20퍼센트 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았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혀 불가능 할 때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으나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나 행사의 경우에 전액을 반환 ② 연습사용권,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으나 전혀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② 연습사용권,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단서 삭제>	○ (원안 제2항 단서) 제2항 본문과 단서 내용의 대상이 달라 같은 항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담당임원, 출전 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 기자	제5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에 배포하여야 하며 검인이 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이상 발행할 수 없다.	제13조(관람권)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원안 제5조 및 제12조) 관람권 발행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부적 집행사항으로서 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와 같다.	③ 관람권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관람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대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관람권을 발행받아 경기나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나 행사의 주최 측 임원, 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제5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1조에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행사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람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람수입정산내역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 (원안 제1항) 검토안 제8조의 '사용의 제한' 조문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였을 때 이미 낸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6.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생길 경우 ② 제1항제5호, 제6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 허가일수에 상응하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다.		○ (원안 제2항) 영 제4조의2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안 제11조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기를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 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및 설비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철거로 인한 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철거된 시설물 및 설비를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권고함. ○ (원안 제2항 및 제3항)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대집행과 같은 권력적 행정행위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삭 제〉	○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함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발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관리위탁)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대 3년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1항) 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어 법에 따라 위탁하면 되므로 원안과 같이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기간 규정에 따라야 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7항에서 지자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은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전민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고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삭 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별표 4 제7호가목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해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으로 정하면 될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권고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조례와 관련법규에 따른 명령·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제21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실익이 없음.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	〈삭 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취소(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취소)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법률과 달리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바 삭제를 권고함.
제23조(대표 및 겸임)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 관리사업소에서 대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초청장),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에 대해 감사	〈삭 제〉	○ 관리수탁자의 보고의무, 지자체의 행정재산 관리상황 확인·조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관리수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감사에 대한 결과에 시정할 사항 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탁자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삭제	제2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등의 파손·망실·구 조변경 등의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 에 사용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 항이 아니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 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에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 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 15.)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 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 임을 질 수도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 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8조의 삭제를 권고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신청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체결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 중인 것으로 본다. 〈삭 제〉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 없는 경우,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 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어 법에 따라 위탁하면 되므로 원안과 같이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별표〉

○○군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및 기준(1회)	체육경기 및 행사		체육경기 및 행사 외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종합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육상트랙	주간	20,000	30,000	50,000	60,000
		야간	30,000	40,000	70,000	80,000

- 전용사용기준은
조건,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조건사용료는
야간사용료에 준한다.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시간초과 시 1시간당
1회 사용료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 천연잔디구장은
사용료의 30%를
가산 적용하며,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하기는 주1회만
한정한다.
-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시 설 명	사용구분 및 기준(1회)	체육경기 및 행사		체육경기 및 행사 외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이클 벨로드롬	주간	30,000	40,000	60,000	70,000
		야간	40,000	50,000	70,000	90,000
	롤러 스케이트장	주간	5,000	10,000	15,000	20,000
		야간	10,000	15,000	20,000	30,000
	축구장	주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50,000	60,000	70,000	90,000
	야구장	주간	20,000	30,000	40,000	50,000
		야간	30,000	40,000	60,000	70,000
	테니스장 정구장	주간	10,000	20,000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30,000	40,000
	풋살장	주간	20,000	30,000	30,000	40,000
		야간	30,000	40,000	40,000	50,000
	족구장	주간	10,000	20,000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30,000	40,000
	농구장	주간	10,000	20,000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30,000	40,000

- 10명 이상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시 설 명	사용구분 및 기준(1회)		체육경기 및 행사		체육경기 및 행사 외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라운드 골프장	주간	15,000	20,000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30,000	40,000	
	(전천후) 게이트볼장	주간	15,000	20,000	20,000	30,000	
		야간	20,000	30,000	30,000	40,000	
	궁도장	주간	20,000	30,000	30,000	40,000	
		야간	30,000	40,000	40,000	50,000	
실 내 체 육 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간		40,000	60,000	60,000	80,000	
	야간		60,000	80,000	80,000	100,000	

(2) 연습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기준	이 용 료		비고
			개인	단체	
종합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육상트랙	1시간당 1명 기준	300	100	○ 시간초과 시 시간당50%를 가산 적용한다.

시 설 명		기준	이 용 료		비고
			개인	단체	
사이클 벨로드롬	롤러 스케이트장		500	300	○ 구기경기장이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풋살장, 농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공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구기경기장		700	500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시간당 1명 기준	2,000	1,500	

(3)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부속시설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설비		1조	20,000	○ 사회대, 연설대 각1개 ○ 마이크 기본 2개, 초과 시 개당 5,000원
전광판	운동장	1회	100,000	
	체육관		20,000	
운동장·체육관 조명		1회	30,000	
냉방·난방		1회	사용실비	
전기료		1회	사용실비	
수도료		1회	사용실비	

(4) 상행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드라마, 영화, CF 등의 촬영	주간	30,000	
	야간	40,000	
에드벌론 등의 계약에 의한 광고행위	1개 1일	5,000	
	1개 1월	100,000	
선전광고 게시물	대형 (1.3m X 30m미만)	10,000	동일행사기간
	중형 (1.3m X 20m미만)	7,000	
	소형 (1.3m X 10m미만)	5,000	
프로그램 등 판매행위	반입부수 1부 가격	20%	
기타 물품 판매행위	실 판매이익	20%	

(5) 중계방송료

(단위 : 원)

사용별	구분	방송료		비고
		TV	라디오	
중계방송	국제경기	20,000	10,000	
	국내경기	10,000	5,000	
	체육이외행사	20,000	10,000	

안 건 명	○○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위임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임조례이면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나목(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이에 맞추어 목적 규정을 수정함.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판부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이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시 치악로 1503번길 판부면행정복지센터 2층에 둔다.	제3조(설치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는 ○○시 치악로 1503번길 판부면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 (검토안 제1항 및 제3항) 포괄적인 설치 목적을 위해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먼저 규정한 후, 위치 등을 규정함. ○ (검토안 제2항) ○○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에 해당하여, 지역문화진흥법령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됨을 규정함.
제5조(업무 및 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마주침 공간(주민소통 공간) 2. 공예, 작품전시 및 판매 공간 3. 공예 및 주민참여 공간 4. 동아리 자치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무용 및 체육활동 공간 6. 악기연습활동 공간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4. 체육·음악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자구를 수정함.
제7조(휴관)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1월1일 및 설·추석 연휴기간과 겹칠 때에는 포함한다)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	제6조(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피 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10시부터 22시까지 2. 토·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신 설〉 〈신 설〉 제8조(센터의 사용 및 제한)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검토안 제1항 및 제2항) 원안 제6조를 두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 (검토안 제3항) 검토안 제6조제2항에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문화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표 1의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자는 접수 받은 날부터 1일 이내 신청 수락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이용 제한 여부, 이	센터 시설의 ‘이용’으로 용어를 수정함. ○ (원안 제1항) 지자체 확인 결과, 공공시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검토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만 사전 신청을 통하여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임. - 원안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검토안과 같이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 별지 서식의 경우 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2항제2호)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원안 제2항제3호) 영상물 등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었고,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시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를 받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50조), 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공연법」 제5조) 등으로 운영되므로, 검열필증을 첨부하도록 한 원안의 규정을 삭제함. 다만, 필요시 현행 제도에 따라 등급분류나 유해성 확인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임.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행사·교육 등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4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 지자체 확인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만 이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원안 제1항에서 무료로 한다는 규정은 삭제함. ○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사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5일 전과 1일 전으로 구분하여 반환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액 미반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 원안 [별표 3]에서는 전액 반환하는 기준을 7일 전으로 규정하였으나, 검토안 제8조 신청서 제출 기한일인 5일 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검토함.
제13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문화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예술관련 단체·법인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청사 내 문화센터를 조성한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센터를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원안 제1항 및 제2항) 민간위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 해당 법률상의 계약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게 되므로 조례에 특정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삭제함. ○ (원안 제3항)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 또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매년 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는 지원할 수 있어 원안과 같이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4 제7호가목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해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의 의무에 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으로 정하면 될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서는 삭제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실익이 없음.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삭 제〉	○ 관리수탁자의 보고의무, 지자체의 행정재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때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관리상황 확인·조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취소(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취소)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법률과 달리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바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 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7조의 삭제를 권고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규칙으로 정할 것이 없는 경우,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별표 1]

문화센터 이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기준	금 액(원)	비고
1회 4시간	20,000	○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냉·난방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프로그램 수강료

(제11조제2항 관련)

기준	금액(원)	비고
1명당 1개월	20,000	○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별표 3]

문화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이 용 료	1. ○○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받은 이용료 전액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4.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5. 이용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수 강 료	6. 프로그램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받은 수강료, 교재비, 재표비 전액
	7.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받은 수강료 전액 미반환 받은 교재비, 재료비 전액
	8. 수강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경제·산업·농림 분야

안 건 명	○○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청년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기업의 정의) “청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의 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판로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책무 규정은 이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4조(육성계획)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전략 2. 제5조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창업공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의 처리절차는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삭 제〉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 청년기업 인증은 청년기업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검토안 제13조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함. ○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 지원사업의 주체는 시장이므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 민간위탁의 경우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청년기업 인증) 시장은 청년기업으로서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청년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원안 제8조제3항의 '유효기간' 부분은 검토안 제6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2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정리함.
제8조(인증절차 등)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년기업의 인증기준이나 절차,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삭 제〉	○ 별지의 경우 규칙이나 훈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안 제2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문구를 수정함. ○ 검토안 제10조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함.
제9조(인증서의 발급)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시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이 중지된 경우 2. 대표자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제2조의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청년기업 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제10조의 인증 취소사유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삭 제〉	○ (원안 제2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청년기업 인증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원안의 ‘유효기간 만료’ 부분은 삭제를 권고함.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법률에서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〇〇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청년기업의 감독 등이 가능할 것임.
제12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원안 제8조제3항에서 이동함.
제1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〇〇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시 의회사무국	〈삭 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우선구매 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제14조(구매계획과 실적) ①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은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해당연도 제품구매 총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에 따라 5퍼센트 이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구매촉진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삭 제〉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1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내부 확인 문서라고 하므로, 별도로 조례에 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우선구매 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함(의견제시 16-0097 참조).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우선구매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매실적을 성과관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2항) 청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 촉진과 우선 구매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실적을 성과 관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를 권고함.
〈신 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원안 제5조제2항에서 이동함.
제1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 제〉	○ 「○○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수여 등이 가능하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

제정안(원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 이므로, 원안 제17조 의 삭제를 권고함.

안 건 명	○○시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것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	○○군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랑상품권”이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	○ (검토안 제1호)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통해 사용하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상품권을 정의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는 종이 및 전자기적형태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환전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삭 제〉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판매 금융기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을 말한다. 〈삭 제〉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	○ (원안 제1호) 검토안 제2호에 포함하여 규정하되, 원안의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로 수정하여 반영함. ○ (검토안 제2호) 원안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안 제4호) “환전대행단체”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지자체 담당자도 아직 정책적으로 “환전대행단체”에 대한 사항이 정해진바 없다고 하는바, 참고조례안 및 유사조례를 참고하여 “환전대행단체”에 관한 부분을 업무 위탁과 검토안 제3호 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나누어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 발행)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상품권의 발행) 군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삭 제〉	규정하기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함. ○ (원안 제6호) 원안의 “사용자”는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과 다르지 않아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원안 제7호) 검토안 제12조제3항에서 풀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상위 법령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전문업체와의 인쇄계약에 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 2. 1만원 3. 3만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한 내용은 내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사항은 검토안 제4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2항) 원안 제4항에서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서의 내용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정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	③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紙類)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삭 제〉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 두어야	○ (검토안 제3항) 원안 제4조제2항의 일부 내용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1항) 원안 제2조제3호 중 판매대행점과의 계약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하되, 원안에서는 계약과 협약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협약으로 수정하여 규정함. ○ (원안 제1항)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당연한 내용으로 삭제하고,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판매가 확인된 상품권은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단체는 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게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한다. ④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 (검토안 제4항) 원안 제14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안 제4항)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검토안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원안 제5항) 검토안 제2항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보임. ○ 원안 제2조제4호의 검토의견 참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	제6조(가맹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삭 제〉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 (검토안 제6조) 원안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 중 가맹점 지정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에 맞춰 조문 제목을 수정함. ○ (검토안 제1항) 가맹점의 지정 요건으로 수정함. ○ (원안 제5조제1항제3호) 원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 (원안 제5조제2항) 검토안 제3호 및 제4호로 나누어 정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별표 1과 같이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니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가맹점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 하거나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삭 제〉	규칙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영업소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권고함. ○ (원안 제6조제1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검토안 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4항) 원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6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안 제6조제4항) 검토안 제8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 (검토안 제2호) 원안 제7항의 내용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하고 환전뿐만 아니라 환전 대행 요청에 대한 사항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또는 신간서적 등 관련 법령에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3항) 지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개별가맹점이 위·변조와 발행번호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므로 조문을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5항) 단서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6항) 검토안 제6조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령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삭 제〉 ⑤ 환전대행가맹점은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원안 제7항) 검토안 제2항제2호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5항)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검토안 제8조) 원안 제6조제4항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이에 맞춰 조문을 수정함.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원안 제1항)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볼 수 없어 삭제를 권고함. ○ (검토안 제9조) 자구를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	1. 상품권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상품권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해야 한다. 〈삭 제〉	○ (검토안 제10조)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환전 대행 요청을 추가하여 규정함. ○ (원안 제3항) 원안은 개별가맹점의 월 환전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개별가맹점이 상품권 수익이 많을 경우에는 환전을 못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 필요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가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8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과 환	제11조(수수료)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환전 및 환전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0.8퍼센트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원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1항) 검토안 제12조제2항으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2항 및 제3항) 검토안 제11조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전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 (원안 제4항) 원안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판매·환전·환전대행 수수료를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상품권 발행 및 운용을 군수가 함에 따라 당연한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및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또는 이용 실적이 우수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에게 예	○ (검토안 제2항) 원안 제12조제1항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3항) 인센티브의 예시를 규정함.
②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에 노력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금 및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환전대행단체, 가맹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회계 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	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할인한 금액의 환수) 군수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할인한 금액 및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개별가맹점이 제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 2. 환전대행가맹점이 제7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상품권 사용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업무 담당	○ 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원안 제17조는 검토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그 금액과 수수료를 환수하려는 취지라고 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수 사유도 주체별로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2항) 검토안 제5조제4항으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제15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의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의 예시를 규정함.
제16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 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16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삭 제〉	○ 상위 법령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법제처 의견 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9조의 삭제를 권고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건 명	○○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토안 제1조)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자치조례 형식으로 목적 규정을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	○ (검토안 제1호) 근거 법조문을 수정함. ○ (검토안 제3호) 원안 제5호에서는 “우수농산물”을 정하면서 근거 법조문을 명확히 인용하지 않아 근거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원안 제5호바목 및 자목에서는 군수가 우수농산물을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 내용이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알 수 없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 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우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	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 관리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인증과 유사하다면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군수가 인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검토 후 입안할 것을 권고함(법제처 의견제시 15-0201 참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우리지역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검토안 제4호) 원안 제13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우리지역”이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지	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카.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기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원안 제2호) 검토안에서 “단체급식”은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과 다르지 않아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원안 제6호) 검토안 제8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원안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검토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역을 말한다. 9. “이외지역”이란 군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0.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삭 제〉 〈삭 제〉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검토안 제1항) 책무 규정은 이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검토안 제2항) 원안 제16조제1항의 내용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다만, 원안에서는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급식”과 “공공급식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지원”의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안에서는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수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 (검토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조례의 총칙부분에 두되, 총칙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어야 하는바 이에 맞춰 조문을 이동함. - 상위법령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조문순서를 공공급식 지원계획→공공급식 지원→공공급식 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순으로 수정함. ○ (원안 제13조) 검토안 제2조제4호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공공급식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8조에 따른 ○○군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사례의 조사·연구 7.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토안 제2항)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취지에 맞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함. 필요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히 입안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원안 제3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여 예산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배분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권고함(법제처 의견 15-0347 참조). ○ (검토안 제3항) 검토안 제1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맞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삭 제〉	○ (원안 제1항) 원안은 공공급식 지원 방법과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것을 혼동하여 쓰고 있는데, 지자체 담당자에 따르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물이나 금전으로 지원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하며, 급식재료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함. ○ (검토안 제4항) 검토안 제1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맞춰 공공급식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7조(급식시설 지원 등)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원안 제1항) 검토안 제3조제2항으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17조) 원안 제6조에 포함되는 내용 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	제8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 제〉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관리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원안 제2항) 검토안 제2항제4호로 정리함. ○ (검토안 제2항)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춰 기능을 수정함. 필요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히 입안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산시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	○ (원안 제4항) 검토안 제10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3항) 원안의 위원회가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인지 운영위원회인지 불명확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원안 제6항) 검토안 제9조제2항으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원안 제2항) 원안의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 구성이 검토안 제1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거의 유사하므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둔다면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 구성 등을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중복되지 않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신 설〉	제10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검토안 제10조) 원안 제18조제4항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1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공공급식지원	○ (검토안 제11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목적에 맞춰 심의 사항을 수정함. 필요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히 입안할 것을 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둔다. 1.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위탁 여부 결정을 포함한다)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고함. ○ (검토안 제1항) 원안 제3항 단서의 내용을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축산유통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지원청장, 2. 위촉직 위원 :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라. 군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 군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군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총괄과장, 축산유통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교육지원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산물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검토안 제3호) 원안 제2호 각 목에서 위원 자격을 상세하게 정한 것을 검토안 제3항 각 목에서 정리하여 규정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사. 군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아.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검토안 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 p.209 참고). ○ (검토안 제1항) 위원의 제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므로, 위원의 제척사유는 검토안과 같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검토안 제5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검토안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검토안 제1항) 군수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원안 제4항)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검토안 제20조로 조문 이동하여 규정함. ○ (검토안 제18조) 원안의 내용을 일반적인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반영함. ○ (검토안 제2항) “팀장”은 법령 및 조례상의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직위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간사는 공공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수정함.
〈신 설〉	〈삭 제〉	○ (원안 제12조)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신 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부 칙	
〈신 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건 명	○○시 □□구 동물보호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구 동물보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시 □□구 동물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 이 조례는 동물보호에 관한 자치조례이나,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 규정에서 법조문을 명시함. ○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바는 없기 때문에 ○○시 □□구에서 위임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음(의견제시 13-0039 참고). ○ 원안 제4호 및 제8호는 해당하는 조문에서 용어를 직접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시 □□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		- 그 밖의 용어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5쪽 참고).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8. “반려견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조(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 ①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 □□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 법 제4조를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1항) 법 제4조에서 동물복지계획수립에 관하여 특별히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바도 없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시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므로, 조례에 동물복지계획과 관련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 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시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	2. ○○○○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동물복지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시 □□구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시 □□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 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문구를 정리함. 이하 같음. ○ (원안 제1항제3호)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하므로 검토안 제3호처럼 정리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지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주관부서 과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 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 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수정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의 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수정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신 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원안 제1항) 정기회의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 (원안 제3항) 검토안 제10조로 이동함. ○ (원안 제4항) 검토안 제11조로 이동함. ○ (원안 제5항) 검토안 제12조로 이동함.
〈신 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원안 제8조제3항에서 이동함.
〈신 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원안 제8조제4항에서 이동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을 「동물보호법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삭 제〉	○ 원안 제8조제5항에서 이동함. ○ (원안 제1항) 법 제12조를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등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 관리하고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삭 제〉	○ 등록대상동물의 변경신고 절차 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1항 및 제2항) 원안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재기재이어서 규정 실익이 없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안 제3항부터 원안 제6항까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 □□구의 조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안 제7항) 법에 위임근거 없이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취소사유는 법 제15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고, 지정취소사유에 관하여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제13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항) 법 제14조제1항의 재기재이어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4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15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 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1항) 지자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1항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 바, - 법 제15조제10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안 제2항) 법 제14조에 따라 진료 등 치료행위가 가능하므로, 조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임 -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동물보호센터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원안 제4항)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1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때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고자 하는자는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 (원안 제3항) 동물의 소유권 취득 및 분양·기증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고, -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안 제4항 및 제5항) 유기동물의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삭 제〉	○ (원안 제1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지자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1항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 바, -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동물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안 제3항 및 제4항)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8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7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사용된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정기준은 「○○시 동물보호조례」제18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된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그 경비의 내역이 기록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항)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시 동물보호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항) 영 제8조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삭 제〉	○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하여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원안 제19조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의미하는 바,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	제13조(교육)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이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되므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시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예산 지원” 부분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검토안 제3항) 원안 제23조제2호에서 이 동함. ○ (원안 제1항) 법 제39조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	〈삭 제〉	○ (원안 제2항) 시정명령은 법 제39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 법에 근거 없는 구청장의 명단 공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항) 법 제45조에 따르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현재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 계획이 없다고 하며, 동물보호센터와 구분되는 별도의 업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을 두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2.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 제24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 등과 관련된 지도·계몽활동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	제14조(홍보 지원)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1호)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원안 제22조를 삭제하였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호) 위원회 활동의 경우 구청장의 소속 기관이므로 별도의 예산 지원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삭제하고, 교육 활동에 관한 예산 지원 규정은 검토안 제13조제3항으로 이동하며,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만 검토안 제14조에서 규정하기로 함. ○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하면 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한 사람 2.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⑤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보건·복지 분야

안 건 명	○○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 이 조례안은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자치조례이므로 이에 따라 자구를 정리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 원안 제3조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1항) 법 제6조제4항에서 시장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한 것이어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법 제6조제2항에 대한 재기재한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항) 법 제6조제5항의 재기재이므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	○ (원안 제2항)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경우 그 주기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되므로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닌 ‘실시한다’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에서 치매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법령의 내용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구체화하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제7조(치매선별검사 실시) ① 시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② 읍·면·동장은 모든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삭 제〉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국가사무인 치매선별검사를 읍장·면장·동장이 안내 및 홍보하는 사항 등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보이므로 삭제하여 정리함.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법 제18조제1항에 대한 재기재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 (원안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대한 재기재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항) 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역사회치매관리 실무협의체 설치 등)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치매관리 실무협의체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체 설치 및 기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2. ○○○○ 3. ○○○○ 4. ○○○○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가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	○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치매관리 실무협의체는 위원회의 성격을 띤 조직이라고 하므로 위원회의 일반적인 입법례로 수정함. - 검토안의 예시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신 설〉 〈신 설〉	장”이라 한다)은 ○○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 3.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1조(홍보위원 위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홍보기관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 법 제19조의 재기재이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 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 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 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 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4조의 삭제를 권고함.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건 명	○○시 □□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구 생명·재산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사회·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 □□구민의 생명·재산 피해주민을 신속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시 □□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시 □□구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피해주민”의 정의 규정을 두어, 원안 제3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해 피해주민을 보호한다.	〈삭 제〉	원안 제2조의 취지가 법령이 적용된 후에 이 조례가 적용됨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러한 규정은 실익이 없음.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시 □□구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지원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한다.	제3조(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① ○○시 □□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에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필수품 2. 구급약품 3. 소형 가전 및 소형 가구(傢具)	원안 제3조, 제5조 및 제7조를 병합하여 검토안 제3조로 정리함.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하되,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검토안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 범위(예:소형 가전·가구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5조(지원종류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생활필수품 지원 : 현물 지원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구급약품 지원 : 현물 지원 3. 소형가전 및 소형가구 지원 : 현물 지원 제7조(지원단가)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날부터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지원기준) ①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피해가구 모두에 지원한다. ② 제5조제3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이내인 가구 2. 재산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 긴급지원 재산의 합계액기준의 2배 이내인 가구 3. 금융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 긴급지원 금융재산 기준의 4배 이내인 자	〈삭 제〉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피해주민이 속한 가구(家口)로 하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이내일 것 2. 재산의 합계액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산의 합계액 기준의 2배 이내일 것 3. 금융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	○ 담당자 확인 결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주민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원안 제10조제2항을 검토안 제4조로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과 병행하여 신청한다. 제9조(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피해자 중 다른 법령이나	는 금융재산 기준의 4배 이내일 것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주민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지원 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 □□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피해주민이 제3조에 따른	○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심사 후 지원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마련함. ○ 지원 취소 결정 시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검토안 제8조), 지원 결정 시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제외한다.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대 15일로 한다.	〈삭 제〉	현물 지원이므로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제11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지원 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원안 제11조와 제12조를 병합하여 검토안 제8조로 정리함. - 원안 제13조제1항의 내용을 검토안 제8조 제1항에서 정리함.
1. 피해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피해자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1. 피해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별표에 따른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물품이 지원 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이 취소된 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을 참고하여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12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지원 금액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생활 실태, 가구 특성, 급여 내용,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금액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일부만 반환이 필	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2. ○○○ 〈삭 제〉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현물로 이루어지므로 원안 제12조제3항 각 호 중 제1호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된 지원비용 등을 이미 소비하여 환수할 가용자산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13조(심의위원회) ① 제10조제2항의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제12조 환수 등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의 긴급성, 위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 관계 법령 준수는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 를 권고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 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 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 □□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 이므로, 원안 제11조의 삭제를 권고함. ○ 검토안 제6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 □□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다른 조례의 개정 조문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함. 「○○시 □□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별표〉

지원 범위(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가구구성원 수 지원 내용	1명 ~ 2명	3명 ~ 4명	5명 ~ 6명
생활필수품	30,000 ~ 50,000	50,000 ~ 90,000	90,000 ~ 130,000
구급약품	10,000 ~ 12,000	12,000 ~ 16,000	16,000 ~ 20,000
소형 가전 및 소형가구	120,000 ~ 240,000	360,000 ~ 480,000	600,000 ~ 720,000

안 건 명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조례가 아니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원안 제2호 및 제3호) 검토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제를 권고함.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	○ (검토안 제3조) 원안 제4조에서 각각의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명칭과 위치를 검토안 제3조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고 이해가 쉬울 것임.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관 가.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시 □□구 인주대로 898 및 □□로 23번길 17(□□동) 2. △△: ○○시 □□구 □□로 23번길 17(□□동) 3. ☆☆: ○○시 □□구 □□로 23번길 17(□□동) 제4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지원	○ (원안 제3조 장애인복지시설 약칭 관련) 용어의 정의는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정의된 용어는 다시 약칭하지 않음. ○ (원안 제4조) 하나의 조에 다양한 시설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라 조를 분리함. ○ (검토안 제4조~제6조 조문의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마. 그 밖에 장애인의 민원사무 처리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 지적, 자폐성 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의 자립생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 다. 이용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 재가장애인(在家障礙人) 활동보조 지원 3.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4. 장애인의 민원사무 처리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 기능) △△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 주간보호 지원 2. 장애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가족 지원	제목 관련) ‘업무’와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검토안 제4조~제6조에서 ‘기능’으로 용어를 통일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장애인이 아닌 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라. 그 밖의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유상적 임금 지급 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상담 다.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라.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구에 거주하거나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종합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	4. 그 밖에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 기능)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3. 장애인의 직업적응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4. 그 밖에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 대상)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 (검토안 제1항) 항을 분리하여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에 따른다.	종합복지관 시설의 일부는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삭제〉	○ (원안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선정에 관한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는바, 원안 제2항을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6조(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을 신청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 위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을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삭 제〉	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 제한의 대상은 수탁자가 별도로 정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 이용 제한 대상을 직접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원안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법」제7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 원안의 내용을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탁자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를 권고함.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적용되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의 규정 내용을 따라야 함. ○ (원안 제3항) 수익금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바, 원안 제3항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제를 권고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 □□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제8조(운영) ① 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9조(위탁 운영)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위탁 근거 외에 별도로 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재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	〈삭 제〉	○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계약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구 재산으로 귀속한다.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의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기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삭 제〉	○ '위탁의 해지'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은 삭제를 권고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및 재산 사용) 구청장은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운영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 별도로 근거를 둘 필요는 없음.
제12조(보험가입 의무)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를 진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삭 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및 제42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야 하는바, 원안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필요하다면 계약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바, 원안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필요하다면 계약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삭 제〉	○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 계약내용에 포함하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5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삭 제〉	여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안의 규정은 삭제를 권고함. ○ 검토안 제9조에 따라 「○○시 □□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지휘·감독) 및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가 적용되므로 원안의 규정은 삭제를 권고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〇〇시□□구 재정운영 조례」, 「〇〇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〇〇시□□구 사무의 위탁촉	〈삭 제〉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〇〇시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〇〇시 □□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원안 제1항) 손해배상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 다시 기재할 실익이 없음. ○ 상위법령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준용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시설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〇〇시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대상임.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되므로 「○○시 □□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례의 민간 위탁 관련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8조의 삭제를 권고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이 없는 경우,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된 장애인 복지시설 위·수탁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수탁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 종전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위탁되었고, 현행 조례에서 위탁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으므로 종전 조례에 따른 위탁을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건 명	○○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안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희망택시 이용 요금의 일부를 희망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내용임.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시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취지를 보더라도 기초지자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의 자치사무에 해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 접근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	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시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후 입안할 것을 권고함(법제처 의견제시 18-0011, 19-0015 참조). ○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조례가 아니므로, 법 인용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이 취약한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 해소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반장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확정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 ○ (검토안 제1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근거 법조문을 인용하여 조문을 수정함. ○ (원안 제2호) 검토안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호) 원안 제3호에서 용어를 정의한 후 원안에서 따로 사용된바 없음. ○ (원안 제4호) 일반적인 용어의 사용과 다르지 않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5. “이용권”이란 시장이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희망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이용가능 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신 설〉 제4조(대상마을 선정) 희망택시 대상마을은 마을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1km이상 농촌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시의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2. “이용권”이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자에게 발급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의 운영)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1.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2.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이 조례안에서 희망택시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 순서를 희망택시의 운영→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희망택시의 이용대상자→희망택시의 운행 범위→이용권의 발행→희망택시 운행 사업자의 선정→이용방법 순으로 수정함. ○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요건을 각 호로 나누어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희망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마을 탑승지역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점지역까지로 한다. 2. 마을 탑승지역에서 거점지역까지의 지원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발생하는 요금의 차액은 시장이 지원한다.	제5조(희망택시의 이용대상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65세 이상일 것 2. ○○○○ 제6조(희망택시의 운행 범위) 희망택시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상마을별 승하차지역을 운행한다.	○ 지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희망택시 이용대상을 규칙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용대상자의 요건은 희망택시 이용 가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조례에서 대략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한 후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안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희망택시는 대상 마을별로 승차지역과 하차지역이 정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만 운행할 계획이며, 대상마을별 승하차지역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함. - 또한, 희망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적인 택시요금과 동일하다고 하므로 별도로 이 조례안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안 제2항의 내용은 검토안 제9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5조(이용권 발행) 시장은 월 단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 대상자,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신 설〉 제6조(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제7조(이용권의 발행) 시장은 예산, 이용대상자 수,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단위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권을 발행하고, 이용 대상자에게 그 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희망택시 운행 사업자의 선정) ① 시장은 희망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를 희망택시 운행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이용방법) ①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업자에게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규정함. ○ 지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이용권은 예산, 이용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발행·지급한다고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이용권의 구체적인 서식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원안 제6조제3항에서 희망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희망택시 사업자가 되는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어 “희망택시 운행 사업자의 선정” 조문을 신설하고, 원안 제6조제3항을 조문 이동하여 검토안 제2항에서 규정함. ○ (검토안 제1항) 지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희망택시 이용 신청은 전화로 한다고 하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운행한다. ②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탑승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분의 요금을 지불한다. ③ 희망택시 이용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희망택시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 혹은 택시운전자가 관여 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1명의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은 이용권으로 지불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가 2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하나의 이용권만 지불한다. 〈삭 제〉 제10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권을 양도·양수한 사람의 희망택시 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로 이를 반영함. ○ (검토안 제2항) 지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희망택시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므로,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은 이용권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함. ○ (원안 제3항) 검토안 제8조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3항) 검토안 제12조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토안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또는 희망택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예약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	제11조(이용요금 지원 신청) 희망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택시 이용요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 2. ○○○○○○ 〈삭 제〉	○ 지자체 담당자 확인 결과, 희망택시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희망택시 사업자가 한다고 하므로, “이용요금 지원 신청”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원안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제1호는 대중교통 요건이 개선되어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는 이용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지원 중단을 규정할 필요가 없고, 제2호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로서 검토안 제1호에서 규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유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원안 제8조제3호는 검토안 제1호의 사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제32조의6 및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희망택시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음. ○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의견18-0025 등 참조)이므로, 원안 제11조의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규칙 등의 제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규칙으로 정할 것이 없는 경우, 원안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안 건 명	○○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미취학 아동 및 초등 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이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이나 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다함께 돌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돌봄 아동”이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 및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돌봄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센터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센터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돌봄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	1. “아동”이란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종합계획)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 2.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자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제5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 (원안 제1호) “돌봄 아동”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용어를 수정함. ○ 원안 제6조에 따르면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외에도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실시하므로, 다함께돌봄센터운영계획이 아닌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원안 제2호) 원안 제2호의 비용 지원이 다함께돌봄센터의 비용 지원인지 다함께 돌봄 사업 전반의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 돌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2. 아동의 등원·하원 지원, 간식 지원, 숙제 지도, 놀이 활동, 아동·부모 돌봄 상담, 독서 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 설〉	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 원안 제5조와 제7조는 ○○군에서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규정으로 그 내용이 유사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토안 제4조로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함. ○ 원안 제5조와 제7조를 병합하여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2조(돌봄 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돌봄 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리 돌봄센터: ○○군 □□읍 □□로 16-3 번지 2. □□ 다함께돌봄센터: ○○군 □□읍 □□로 58번지 제9조(이용시간) 돌봄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탁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리 다함께돌봄센터: ○○군 □□읍 □□로 16-3 번지 2. □□ 다함께돌봄센터: ○○군 □□읍 □□로 58 번지 제6조(이용 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원안 제9조 단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 설〉 제10조(휴무일) ① 돌봄 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돌봄 센터의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무를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돌봄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되,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센터의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검토안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가 부득이하게 휴무하는 경우에 군수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수정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원안의 내용은 삭제해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다함께돌봄사업) 군수는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센터 마련·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센터 종사자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검토안 제4조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이며, 원안 제5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토안에서는 제9조와 제10조로 따로 정리함.
〈신 설〉	제9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 원안 제5조제3호와 제4호를 병합하여 검토안 제9조로 정리함.
〈신 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 원안 제5조제5호, 제6호 및 제15조를 병합하여 검토안 제10조로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5조(돌봄 센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군수는 돌봄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국외 연수 및 워크숍, 우수 사례 견학을 진행할 수 있다.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 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다함께돌봄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돌봄 센터 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센터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아동 돌봄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제11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 〈삭 제〉	○ 검토안 제11조의 다함께 돌봄 협의회는 지역 연계 외의 기능도 하며, “협의회”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므로, 원안의 표현인 “지역 돌봄협의체”를 “다함께 돌봄 협의회”로 수정함. ○ (검토안 제1호) 검토안 제3조에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 ○ (원안 제3호) 협의회는 자문기관으로 돌봄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돌봄 센터 간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다함께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센터 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내 초등학교 교장 3. 학부모 대표 4. 돌봄 센터 대표	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다.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대표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 원안 제3항의 내용 중 일부를 검토안 제1항에 포함하여 정리함. ○ (원안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수가 운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5.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마.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함께돌봄센터의 대표'를 위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검토안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원안의 단서 규정은 검토안 제2항으로 정리함. ○ (검토안 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검토안 제2항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9쪽 참조).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 운영) 〈신 설〉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 검토안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군의원이 그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 검토안 제14조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을 것임. ○ (원안 제7항) 간사는 별도의 규정(검토안 제17조)으로 정리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4조(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① 군수는 돌봄 센터 운영·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센터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센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군수는 다함께돌봄 센터의 운영·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0조제3항의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은 법령 및 조례 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돌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함.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7조(예산·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센터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원안 예산 부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결산” 부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안 제17조의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결산 관련 내용은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것을 권고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8조(포상) 군수는 돌봄 센터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게 「○○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군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또는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4. 조직·공무원 분야

안 건 명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위임조례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 여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하는 바, 이 조례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을 원안과 같이 검토함.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을 토대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삭 제〉	○ (원안 제1호 및 제2호)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3호 및 제4호) 이하 자주 나오는 용어가 아니므로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를 의미한다.	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용어가 처음 나오는 검토안 제5조제2항에서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고 해당 용어의 정의규정을 삭제할 권고함. - 또한,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에 따른 재위탁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등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함.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자구를 수정함.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원안 제1항)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 관련 시설 2. 문화예술·체육·관광·교육 관련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 관련 시설 2. 문화예술·체육·관광·교육 관련 시설 3. 환경기초·상하수도 관련 시설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 관련 시설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삭 제〉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삭 제〉	○ (원안 제2항)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사·검사·검정 업무와 관리업무로 구분하고, 관리업무의 대상시설을 각호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시설 3. 환경기초·상하수도 관련 시설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 관련 시설 5. 농업·경제·산업 관련 시설 6. 교통, 주차 관련 시설 7. 보건·건강증진 관련 8.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9. 기타 시장이 시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④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자치사무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5. 농업·경제·산업 관련 시설 6. 교통, 주차 관련 시설 7. 보건·건강증진 관련 8.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9. 기타 시장이 시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항)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수탁 대상 기관을 공개 모집할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	○ (원안 제1항)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삭제해 권고함. ○ (원안 제2항)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신 설〉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 (원안 제3항)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항을 분리하고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〇〇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 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9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	○ 공개모집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적용됨. - 해당 법률상의 계약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게 되므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내용은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검토안과 같이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7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검토안 제1항) 수탁기관 선정 심의사항을 규정할 것을 권고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11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를 바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탁기관 선정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전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검토안 제2항) 원안 제9조제2항의 내용을 이동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으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실·과·소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	○ (검토안 제1항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신 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삭 제〉	○ (검토안 제3항) 원안 제4항의 내용을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5항) 검토안 제14조로 이동하여 규정함. ○ (원안 제6항) 「○○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 원안의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의3(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	○ 자구를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4(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삭 제〉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자구를 수정함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평,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의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고 인정할 때에는 사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입법례에 따라 '간사' 규정을 보완하여 규정함.
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14조(사업계획서 검토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의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	○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2(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다음 각 호의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	○ (원안 제1항) 자구를 수정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0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원안 제2항)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원안 제3조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25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제〉 〈삭제〉	에서 규정하여 단서 규정을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3항) 검토안 제7조제2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삭제제를 권고함. ○ 검토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포함하여 규정함.
제13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제17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	제18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	○ 행정부 지침을 고려해 반영함.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임·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삭 제〉	○ (원안 제1항 및 제4항)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위반 시의 책임 등은 검토안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에 포함하여 공증하도록 규정함바,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평,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삭 제〉	원안을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운영 지원” 사항은 검토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조문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제21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8조(사용료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원안 제1항 및 제3항)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2항) 수탁자의 의무를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해서는 검토안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삭제 권고함. ○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해서는 「지방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1. 수탁기관이 제9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시장의 지휘·감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임원 또는 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자유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탁을 통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위탁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서 그 사유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되므로 삭제를 권고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 외에 해지 사유를 추가하려 한다면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를 검토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2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삭 제〉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 수탁자의 의무를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해서는 검토안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원안 제1항을 삭제 권고함. ○ 수탁자의 의무를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해서는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검토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토안과 같이 정리함. ○ 자구를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어야 한다.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직원과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 자구를 수정함. ○ (원안 제1항 단서) 법령은 당연히 이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고, 이 조례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이미 규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삭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규정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항) 자구를 수정함. ○ (검토안 제3항) 원안 제1항의 내용을 이동하여 규정함. ○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임. - 수탁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수탁기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재위임·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삭 제〉	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원안의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임 또는 재위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은 사무 권한의 소재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현행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그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것이어서 법령상 근거 없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등에 다시 위탁을 할 수 없는바, 원안과 같이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 (원안 제2조) 자구를 수정함.

안 건 명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지자체 원안)
조 례 종 류	자치조례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조례이나,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 규정에서 법조문을 명시함. ○ (원안 제1호 및 제3호)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삭제함(『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5쪽 참조).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군의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4호) 검토안 제8조제1항에서 풀어쓰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삭제함. ○ 원안 제3조는 ○○군의 모든 행정에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함.
제4조(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	제3조(책무)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	○ 원안 제4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항을 분리하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단체·전문가·기관은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협력하고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5조(구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구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가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구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책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여 규정함. ○ (검토안 제3항) 원안 제9조제3항에서 이 동함. ○ 원안 제5조와 제6조를 병합하여 정리함. ○ (원안 제1항) 위원회 심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분리하여 규정함. -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적절하게 수정 가능할 것임.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신 설〉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자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등의 수립 전에 초안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1. ○○○○ 2. ○○○○	○ (원안 제6조제1항) 행정기관 내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가 아닌 규칙 등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삭제함. ○ (원안 제6조제3항) 관련 교육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8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5조(조성 기준 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평등 실현 3.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4.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원안 제3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함.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삭 제〉	○ (원안 제1항) 법 제21조의 재기재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원안 제2항) 법 제22조의 재기재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원안 제3항) 검토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 규정으로 이동하여 규정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 정책추진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유기적 연계	〈삭 제〉 제6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간계획(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라.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원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16조의 내용의 재기재이어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 ○ 「○○군 도시계획 조례」 등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조례에서 각각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간 사회교육 간 연계 2.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기업의 발굴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7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 3.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	○ 원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을 병합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야 한다.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1. ○○○○ 2.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 원안 제15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 지역특성화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지역특성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사항을 자문·제안·심의하기 위하여 ○○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등의 수립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당연직 위원은 군정업무 중 기획·여성·도시공간·기업정책·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여성·도시공간·기업정책·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명 나.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 (원안 제3항 및 제4항) 원안 제3항과 제4항을 병합하여 규정함. ○ (원안 제2항) 「○○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촉이 가능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신 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 (검토안 제1항)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에 따라 제1항을 신설함. ○ (원안 제1항) 정기회의의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위촉·구성한다. 〈신 설〉	결한다. 〈삭 제〉 제14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③ 군민참여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원안 제3항)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 가능하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원안 제21조의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함. ○ (원안 제2항) 검토안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고 문구를 정리함.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23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및 홍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제15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24조(임기)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군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모든 단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단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5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정 안(원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추진실적 평가, 포상 등의 규정 내용에 맞게 조문 순서를 맨 뒤로 이동함.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발행처: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 화: 044)200-6761

F A X: 044)200-6972

발행일: 2019년 12월
